

대전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4가단237365 판결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김원규

피고B

변론 종결2024. 11. 13.

판결 선고2024. 1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4.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4,400,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24. 3. 31.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4.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위약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차임 10,736,155원, 미지급 관리비 3,875,600원, 반환할 인테리어 지원금 15,388,493원, 2024. 4. 1.부터 2024. 6.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및 위약금 14,400,000원을 합한 44,400,248원(=10,736,155+3,875,600+15,388,493+14,400,000)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00,248원(=44,400,248-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건물의 차임이 주변 상가에 비하여 2배 정도 비싸다며 차임을 감액하여 주면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협의 하에 차임을 정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백효민

별지